

의안번호	2201247
의 퇴 인	이준석의원
회 답 일	2024.08.16.
추 계 번호	24D10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122조의2제3항(선거비용의 보전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며, 그 횟수는 후보자는 6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 수 없음 ※현행법은 8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항목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비용,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하는 경비를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62조제2항(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시 선거사무원 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현행법은 2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시 선거사무원 수는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현행법은 10인 이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시 선거사무원 수는 선거사무소에 6명 이내 ※현행법은 8명 이내	재량규정
3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제122조의2제1항(선거비용의 보전)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규정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현행법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현행법에서는 보전 대상이 아님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122조의2제3항(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2조제2항(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선거사무원 수의 감소로 수당 및 실비 지출이 감소하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3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제122조의2제1항(선거비용의 보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부담(안 제59조 및 제122조의2제3항)

-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를 현행 8회에서 6회로 제한하고 문자메시지 비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경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재정소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경비 등 선거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에 따른 비용 감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비용 부담에 따른 지출 증가 등 재정소요의 증감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여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공직선거별 예비후보자 수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1,612명, 2022년 대통령선거 25명, 전국동시지방선거 9,955명

□ 선거비용제한액 축소 및 선거비용 보전대상 확대(안 제121조 및 제122조의제1항)

- 개정안은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현행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에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규정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고, 선거비용보전 비율은 인상하고 대상은 확대하여 재정소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선거비용보전 비율의 경우, 현행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나 개정안은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
 - － 선거비용보전 대상의 경우, 개정안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 후보자에게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보전 대상이 아님
- 다만,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유효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대상자 수, 평균 보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정안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은 감소하나 선거비용보전 비율은 인상되고 대상은 확대되어 재정소요의 증감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여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공직선거별 선거비용보전 규모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874억 3,973만원, 2022년 대통령선거 826억 2,6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3,337억 3,800만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